

개정(안)	수정(안)	사유
<p>p9 나. 용역수행실적 (3) 전차용역 수행실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정도[용역의 종류,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, 단독·공동·하도급여부, 당해 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(면적, 길이, 금액 등)]에 따라 평가 - 하나의 용역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용역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-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당해용역에 인정되는 전차용역 및 인정범위,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정도[용역의 종류,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, 단독·공동·하도급여부, 당해 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(면적, 길이, 금액 등)]에 따라 평가 - 하나의 용역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용역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-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당해용역에 인정되는 전차용역 및 인정범위,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 분야(도로, 철도, 하천, 도시계획, 항만, 상하수도 등) 별로 전차용역 수행정도가 다르므로 비율(면적, 길이, 금액 등) 적용이 어려움 - 단순한 면적, 길이, 금액으로 비율을 정하지 말고 전차용역의 수행 정도(위치, 규모, 용량산정, 각종 계산서, 도면, 공법, 사업비, 사업시행계획 등)가 당해 발주용역에 관련성 및 적용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발주처에서 인정율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- 전차용역을 수행한 업체에 유리한 측면이 미미함 - 업무량은 많고 용역금액은 작은 타당성조사/기본계획/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에 유리한 점이 미미하므로 타당성조사/기본계획/기본설계에 참여할 의미가 없음. - 인정율을 적용할 경우 배점(1점) 획득 불가 - 비율(면적, 길이, 금액 등)을 적용할 경우 택일 또는 합산을 적용, 또한 금액은 공사비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함.

